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"를 "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: 1천억원
-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 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: 1천억원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: 5천억원
- ②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"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"를 "회계처리기준 및 공시기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회계처리기준에

관한"을 "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"으로 한다.

- 2. 회계처리기준 해석
- 3. 회계처리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

제9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
 - 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
 - 나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 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

다. 금융회사

- 4.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6명 미만인 회사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.
 -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: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
 -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 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: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
 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: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

로 5천억원

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신고자등의 인적사항(다만, 내부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)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32조(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)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8조제1 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를 감면(減免)할 수 있다.
 - 1. 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: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
 - 가.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,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
 - 나. 증권선물위원회, 감사인이나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기다 고지하였을 것
 - 다.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,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. 신고자등이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: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감경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개 정 안 제4조(대형비상장주식회사) 법 제 제4조(대형비상장주식회사) ① --2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라 1천억원을 말 ----은 다음 각 호의 구 한다. 분에 따른다.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<신 설> 관한 법률 _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 인인 경우: 1천억원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: 1천억원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: 5천억원 ②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 <신 설>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 다. 제7조(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 제7조(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 탁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 탁 등) ① -----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(이

- 하 "한국회계기준원"이라 한다) 에 위탁한다.
- 1. (생략)
- 2.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

<신 설>

- 3. 그 밖에 <u>회계처리기준과 관련</u>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
- ② 한국회계기준원은 <u>회계처리</u>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- ③ ~ ⑦ (생 략)
- 제9조(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)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회사"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를 말한다.
 - 1.·2. (생략) <신설>

··
1. (현행과 같음)
2. 회계처리기준 해석
3. 회계처리기준 질의에 대한
회신
<u>4</u> 회계처리기준 및 공
시기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
<u>원회</u>
② <u>제1항제1호</u>
및 제2호 관련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9조(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
등) ①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
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

<신 설>

- 3. (생략)
- ② ~ ⑩ (생 략)
- 제15조(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제15조(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) ①·② (생 략)
 - 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 로 1천억원을 말한다.

- 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않는 회사
- 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제 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 출대상법인
- 나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 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 단 소속회사

다. 금융회사

- 4.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이 6명 미만인 회사
- 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- 감사인 지정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-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-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|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

- ④ ~ ⑥ (생 략)
- 제31조(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) 제31조(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)
 - ① (생략)
 -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자(이하 "신 고자등"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(이하 "신고서"라 한다)에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신고자등의 인적사항

- 인인 경우: 직전 사업연도 말 을 기준으로 1천억원
-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: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
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: 직전 사업연도 말 을 기준으로 5천억원
-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 - ① (현행과 같음)

 - 1. 신고자등의 인적사항(다만, 내부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 고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

- 2. ~ 4. (생 략) ③ ~ ⑦ (생 략)
- 제32조(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제32조(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)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 에 따른 조치를 감면(減免)할 수 있다.
 - 1.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 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, 다른 관련자 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

날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)
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감면)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 8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등에 대 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29 라 신고자등에 대한 법 제29조 조에 따른 조치를 감면(減免)할 수 있다.

- 1. 신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: 법 제29 조에 따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
 - 가.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.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
 - 나. 증권선물위원회, 감사인 이나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 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 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

-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 하였을 것
- 다.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으며, 그 위반행 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
- <u>지 않는 경우: 법</u> 제29조에 따 른 조치를 감경
- 2. 증권선물위원회, 감사인이나 2. 신고자등이 제1호에 해당하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하거 나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 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 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 하였을 것
- 3.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 하였으며, 그 위반행위를 증명 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 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

<삭 제>